

대구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2882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1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규태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9.24. 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2. 2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예정찬	단층주 택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	220,000,000			21.10.29.	21.10.29.	
<p><비고> 예정찬: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(2023카임3). 이 사건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자의 지위를 승계함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을구 순위번호 5번 주택임차권 등기(임차보증금 220,000,000원, 전입일 21.10.29., 확정일자 21.10.29.)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.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일괄매각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장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28822

[물건 1]

-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780-15
대 468m²
-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780-15
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3길 39-111
위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04.61m²

감정평가액		282,119,1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4.14	16,264,000	1,626,400
2회	2026.05.19	11,385,000	1,138,500
3회	2026.06.19	7,970,000	797,000
4회	2026.07.21	5,579,000	557,900
일괄매각			